

외화 정기예금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범위

이 약관은 거래처와 홍콩상하이은행 (이하 “은행”)과의 외화 정기예금 거래 (이하 “예금”)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 예금약관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한 때 지급한다.

제3조 예금 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한다.

제4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원화 1백만원에 상당하는 해당 통화금액으로 한다.

제5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기업 고객으로 한다.

제6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개인고객일 경우 최저 7일 이상 60개월 이내, 기업고객일 경우 최저 1일 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 또는 일단위 중에서 거래처가 선택한 기간으로 한다. 단 은행의 사정으로 인해 일부 계약기간의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이 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일의 해당 통화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수신 007-03 (2008.04.14)

제8조 이자계산

이 예금의 이자는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며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 통화별로 적용되는 연간일수는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제9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 ①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로 한다.
-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예치한 외화의 자원이 원화 또는 송금에 의한 외화일 경우, 고객이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외화 현찰로 인출할 때에는 인출 시점에 관계 없이 당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수수료율표에 명시된 외화 현찰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다.
- ③ 은행은 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제10조 중도해지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자는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중도 해지 이율로 쉼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제11조 기한 변경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기한변경”이라 함)는 제 8조에 불구하고 예금일로부터 기한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 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이율로 한다. 다만, 기한 변경한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의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8조에 따라 처리한다.